16세기 제네바교회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 -권징/치리를 중심으로-

이정숙 박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학사부총장)

시작하는 말 그리고 용어 규명

역사가는 마치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아 세상을 보는 난장이와 같다 하겠다. 개신교종교개혁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전문역사가이든 단순한 관심자이건 상관없이 역사공부를 통하여 우리를 더 높이 올려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 주는 수많은 거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그 거인들의 도움으로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여 재조명하고, 다가올 미래를 감히 가늠할 수 있는 혜안을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16세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은, 특히 칼빈과 같은 거인의 어깨 위를 앉아 보는 일은 개신교 5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21세기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마땅히 사모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전 세대에 비하여 20세기 후반 이후 칼빈연구가들은 목사 칼빈을 연구하고 재조명하였다. 그 결과 목사 칼빈과 제네바교회의 목회에 대하여, 특히 성도의 훈련과 권징(church discipline)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나오게 되었다. 오랫동안 제네바 고문서도서관에 갇혀 있었던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회의록이 전사(transcription)되고 번역되면서 컨시스토리 연구가 활발하여졌다.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제네바 목사회(Venerable Company of Pastors)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목사회 회의록 역시 새롭게 주

목받기 시작하였다. 목사회 회의록이 현대 불어로, 또한 영어번역으로 이미 오래 전에 출판된 데 비해, 컨시스토리 회의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고, 고대불어와 속기 형태의 기록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일반화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신학자 칼빈을 목회자 칼빈으로 이해하고, 제네바교회의 목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칼빈연구의 동향은 신학적 관심보다 목회적 관심이 더 높은 한국교회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16세기 제네바교회의 성도의 훈련과 치리를 살펴 21세기 한국장로교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21세기 장로교회에서는 세 교단의 권징조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권징조례가 제네바교회의 권징신학과 실행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한 필자의 정의를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로 “church discipline”에 대한 개념과 번역의 문제이다. Church discipline은 일반적으로 권징이나 치리로 번역된다. 그런데 권징과 치리는 discipline이 담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church discipline을 성도의 훈련과 권징 혹은 치리로 번역하고 있다. 개신교가 막 출발한 16세기에 성도들을 개신교적인 신앙과 삶의 규범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church discipline을 담당했던 컨시스토리는 성도의 훈련과 죄와 잘못된 신앙과 행동을 교정하는 권징을 담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용어는 컨시스토리(Consistory)이다. 컨시스토리는 장로회, 당회, 치리회, 교회법원 등으로 번역되어져 왔다. 필자는 컨시스토리를 번역없이 음역하여 컨시스토리라고 명기해 왔다. 컨시스토리의 기능에 적합한 기존의 명칭이 없고 또 새로운 명칭을 만드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컨시스토리가 장로회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은 장로가 중심이

지만 목사가 당연직(ex officio)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당회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개교회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네바 시의 세 교회와 제네바 주변의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들과 목사들의 모임이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교회법원이라고 번역하기를 꺼리는 것은 컨시스토리는 법원의 기능이 있지만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이다.[1] 물론 현대 법원은 분쟁조정을 중시하고 있고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생각하지만 중세시대의 엄격한 교회법원(Inquisition)의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요약하면 이상의 번역은 컨시스토리의 기능을 제한하고 축소시키거나, '엄격한 칼빈'이라는 고전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컨시스토리를 번역하지 않고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컨시스토리를 치리회로 지칭하는 것은 다른 번역보다 더 정당성이 있지만, 컨시스토리가 단일기구임에 반해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를 총칭하는 용어이기에 이 또한 사용하기에 어렵다고 보았다. 굳이 치리회 중에서 선택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는 노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재 노회의 기능으로 16세기 컨시스토리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컨시스토리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16세기 칼빈 당시의 컨시스토리는 불어로 표기하는 것이 국립국어원이 제정한 외래어표기법에서 대원칙이 되는 원지음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용어에 대해 필자가 이전의 글들에서 설명하고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 기회에 이 용어들을 다시 설명하여 16세기 제네바교회가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실시한 성도의 훈련과 권징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2]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한국장로교회가 21

1) 컨시스토리의 기능에 대해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은 교회법정, 교육과 상담기관으로 정의한 바 있다. Cf.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95), 4.

2)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칼빈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2000):159-185에서 처음 소개한 이후 다른 주제들과 연결하여 소개한 논문들이 있다.

세기 한국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살펴보며 관련 부분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16세기 제네바 교회와 성도의 훈련과 치리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나타난 출교와 해벌[3]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 것은 필자가 당시 섬기고 있던 한인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간에 생긴 묘한 긴장감의 이유를 알게 된 것과 상관이 있다. 교회(담임목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정인에게는 권징을, 다른 이에게는 권징을 하지 않았으니 담임목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불만이 그 이유였다. 마침 그 지역의 또 다른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서 교회의 권징과 교인의 권징불복이 일반신문에까지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 "권징"에 대해 처음으로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되었고 장로교회의 근본이 되는 칼빈에게서 이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마침 컨시스토리회의록이 전사되던 때여서 제네바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권징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었다. 필자의 연구는 비록 회의록 전체를 볼 때 적은 분량을 다룬 연구였지만, 당시 일반사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제가 교회사 학위논문으로는 처음으로 다루어졌다는 점과, 해벌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연구를 통하여 해벌에 관한 종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았다.

권징 혹은 치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던 컨시스토리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칼빈의 목회 중 양육 목회는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양육의 목회는 강단의 목회가 실제화/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다. 성도들이 듣고 본 바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돌아보

3) Jung-Sook Lee,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삶의 변화를 도와주는 목회이다. 칼빈이 설교와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여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를 세우는 강단의 목회 혹은 말씀의 목회를 했다면, 컨시스토리를 양육 목회의 도구로 삼았다. 양육의 목회는 성도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고백을 바르게 하고, 자신들의 삶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모범된 삶을 살도록 돕고, 또한 성도들이 성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목회이다. 이러한 목회는 결국 성화를 통하여 온전한 영화에 이르러야 할 성도들을 더 성도답게 해 주는 목회라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교회론에서 지상의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는 하나님만의 절대 권한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교회에서 누가 성도인지를 어는 정도 알아볼 수 있는 표지(charitable judgment)를 주신다고 했다. 그 표지가 바로 신앙고백, 삶의 모범, 성례전의 참여이다.[4] 결국 칼빈의 목회는 교회의 표지를 세워 교회를 참으로 교회답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표지를 확실히 갖게 해주는 도움의 목회였다.

교회와 사회와의 구분이 최소한이었고 시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던 16세기 제네바 상황에서 칼빈은 시의회와의 갈등과 타협을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5] 또한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권징하는 일을 도모하면서 개신교인들이 칭의의 교리를 왜곡하고 구원의 축복을 저버리는 반율법주의자(antinominalist)가 되는 어리석음을 막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16세기 컨시스토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4) John Calvin, *Institutes* 4.1.8.
5) 칼빈의 예배 개혁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칼빈과 예배" 『백석신학저널』 16호 (2009): 31-52. 혹은 요한칼빈 500주년기념사업회, "칼빈의 예배신학과 실천",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서울: SFC, 2013): 87-111을 참고하시오.

1) 컨시스토리 연구와 관련 분야 연구의 역사

컨시스토리에 대한 연구는 로버트 킹던(Robert McCune Kingdon) 교수로 대표되지만 킹던 교수 이전에도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킹던 교수에게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연구방향을 결정짓는데도 유용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네바 출신의 학자 프레데릭 아우구스뜨 크레머(Frédéric-Auguste Cramer)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다. 그는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전사(transcription)하여 *Notres extraites des régistres du Consistoire de L'Eglise de Genéve*, 1514-1814 (Geneva, 1853)을 출판한 바 있다. 크레머의 선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 즉 전체 사건의 5% 정도를 전사하였고 그나마 전사된 부분들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사된 부분들이 16세기 당시의 일반적인 삶을 두루 대표하기 보다는 특정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후 1932-42년에 걸쳐 발터 쾰러(Walter Köhler)에 의해 *Zürcher Ebegericht unter Genfer Konsistorium* 가 출판되었지만 그의 연구는 크레머의 통계에 기초하고 있어 "완전히 무가치하다"라고 킹던을 결론짓는다.[6]

이후 1967년에 출판된 E. W. Monter교수가 *Calvin's Geneva* 가 컨시스토리의 연구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책을 출판하였고, 그의 논문, "The Consistory of Geneva, 1559-1569"[7]을 통해 특정기간동안 컨시스토리에서 출교(excommunicaton)가 어느 정도 실시되었는지, 또 그 이유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역적인 차이(제네바 시와 부근 지역간)는 없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컨시스토리 연구에서 가장 의

6) Robert M. Kingdon, "Calvi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istory Discipline in Geneva: the Institution and the Men who Directed It," *Netherlands Archief voor Kerkgschiedenis* 70(1990): 158-172.

7) E. W. Monter, "The Consistory of Geneva, 1559-1569"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T. 38, No. 3 (1976), pp. 467-484.

미있는 선행연구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연구도 표본구성(sampling)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몬터는 11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10번의 컨시스토리 모임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그 모임에 나타난 사건들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에도 몬터는 1559년부터 1570년까지 출교된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살펴보았기에 이 연구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고 인정된다.

컨시스토리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고(故) 로버트 킹던 교수의 오랜 신념과 열정, 그리고 탁월한 제자들 덕분이다. 킹던 교수는 미국교회사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연설에서 교회사에서 제도 혹은 기관(institution)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6세기 프랑스 칼빈주의자들인 위그노 연구를 해 오던 그가 16세기 자료 중 가장 잘 보존된 자료이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주목하였다. 일차적으로 회의록을 전사(transcription)하는 일의 시급성을 직시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칼빈 당시의 회의록을 전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16세기 제네바시의 삶을 재구성해내는 탁월한 사회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에서 사회적 정치적 통제를 위해 마련된 흔치 않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8] 또한 그는 컨시스토리는 유럽 전체 역사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며 이를 "심문법정(hearing court), 강제적 상담기관(comoulsory counseling service), 그리고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이라고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한 바 있다.[9]

컨시스토리 회의록은 컨시스토리의 독특한 구조, 즉 장로와 목사들과 법적구속력을 가진 소환관 외에 전문 서기를 두었기에 가능했다. 이 기록은 전문 서기의 속기로 회의 중 기록되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폴리오의 형

8) Kingdon,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Control in Calvin's Geneva," *Archivfür Reformationsgeschichte* (special volume, 1993), 523.
9)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in Calvin's Geneva*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

태로 보관되었다. 이 회의록은 불어가 현대화되기 이전인 16세기 불어이기에 현대불어에만 익숙하다면 불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지성인들조차도 해독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서이다. 고대 불어의 특징은 철자의 확정이 일어나기 전 음성적(phonetical) 기록이라 한 문서에서 동일 이름이 대여섯 개의 다른 철자로 표기되기도 한다. 또한 회의 중 속기로 기록한 후 다시 풀어 쓰지 않았기에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야 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킹던은 1) 회의록을 전사하고 2) 비평본을 만들고, 3) 그 비평본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원했다. 그 결과 전사된 일체의 회의록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와 캘빈대학의 헨리 미터센터(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에 파일 형태로, 프린스톤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 파일과 프린트본으로 있다. 또한 비평본은 제네바에 위치한 출판사 Librairie Droz에서 현재 6권을 출판한 상태이다.[10] 비평본의 속도에 비해 영어번역의 속도는 느리다. 현재까지 비평본 1권(1542-1544)이 번역 출판된 상태이다.[11]

긴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회의록의 출판과 함께 컨시스토리 회의록 내용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접근성이나 해독성의 난이도가 이 연구의 큰 장애물이었다, 반면 이 문서를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도우는 고서체(paleography) 읽기가 헨리미터센터와 같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는데 이 모든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더 다양한 컨시스토리 연구를 가능하게 되었다. 로버트 킹던 교수가 2010년 작고하기까지, 또 회의록 전사에도 참여하였던 토마스 램버트(Thomas Lambert)나 킹던 교수의 제자 제프리 와트(Jeffrey Watt), 그 외에도 윌리엄 내피(William G. Naphy) 같은 학자들이 컨시스토리 연구의 성과물을 내고 있다. 이 연구

10)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 1542-1544; Tome II, 1545-1546; Tome III, 1547-1548; Tome IV, 1548, avec extraits des Registres du Conseil, 1548-1550; Tome V (20 février 1550 - 5 février 1551): Tome VI (19 février 1551 - 5 février 1552); Tome VIII (25 mars 1553-1er février 1554).

11) Isabella M. Watt, Robert M. Kingdon, Thomas A. Lambert, ed. *The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at the Time of Calvin: Volume 1: 1542-1544*, translated by M. Wallace McDonald, (Grand Rapids: W. Eerdmans Publishing Co., 2000).

들은 그 독특성과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가들에 의한 사회사적 연구라는 점에서 칼빈의 신학과의 조화가 아쉽다. 필자의 연구는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작은 시도였다. 최근 들어 스코트 매네치(Scott M. Manetsch) 교수가 목사회 회의록을 연구하면서 컨시스토리 회의록 역시 병행하여 연구하여,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Oxford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를 출판하였다.[12] 언어적인 한계와 연구환경의 상대적 열악함을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인문학이나 신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관한 한 당분간 서양학자들의 연구에 더 기대어야 할 형편이다.

2) 컨시스토리와 그 활동

칼빈은 1537년 교회와 예배 조직에 관한 논제(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a Genève, proposés au Conseil par les Ministres)에서 가톨릭교회 의 관행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교황의 관할 아래 있는 것 중 출교보다 더 유해하고 악한 것은 없다. 사실 출교는 구세주께서 교회에 허용하신 유익하고도 건전한 것들 중 하나인데 말이다."라고 한탄하면서 가톨릭교회가 출교를 통하여 교인들을 교회와 갈라서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출교의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18장 15-17절 주석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출교를 회복하셨고, 출교 이전의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성도의 교정과 회복을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다.[13] 1541년 제네바로 재입국하면서 칼빈이 제시한 조건은 다름 아닌 권징의 회복이었다. 그는,

12)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대학원의 교회사교수인 메네치는 데오도르 베자 연구에서 시작하여 칼빈 연구를 겸하게 된 학자이다. 이 연구서는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신학적 목회적 시각을 잘 담고 있다.
13) *CO* 45, 514: Commentary on Mt. 18:16.

만약 여러분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망명 생활하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진리 자체인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악한 삶이 깔려 있고 행하는 것이 말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면 나를 두 번째로 이 도시에서 내치셔서 나로 새로운 망명지에서 고통의 쓰라림을 다스리게 하소서. 아니면 준엄한 법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소서. 순전한 권징(훈련)을 다시 세우소서.[14]

이러한 그의 단호한 주장은 1541년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을 통하여 그 형태를 드러낸 컨시스토리에서 실현된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컨시스토리는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다. 이미 로마가톨릭 교회는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칼빈이 컨시스토리를 출범하면서 변화를 준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평등협력목회(collegial and cooperative ministry)를 표방한 것이다. 즉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컨시스토리가 전적으로 목회자들만의 사역기관이었다면 장로로 대변되는 평신도의 참여와 공헌이 컨시스토리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사역(자)론은 하나님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셔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그의 교회론/목회론에 근거하고 있다.[15] 칼빈은 선지자나 사도가 특정한 시대에 사용된 직분인 것과는 달리 목사, 박사(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4중직은

14) Theodore Beza, *Life of Calvin*, I, 25-26,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366.에서 재인용.
15) *Institutes*, 4.1.1-4.
16)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다. 종신직과는 구분되어야 할 개념임에도 이후 일부 개혁교회에서 또 한국장로교회 혹은 유사장로정치를 택하는 교회에서 종신직으로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어느 시대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고,[16] 이 직분들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협력사역을 만들었다. 목사와 박사가 목회자에 해당된다면, 장로와 집사는 평신도로 이들은 교회라는 외적 수단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는 사역자이다.[17] 사역자들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함께 그러나 다른 기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일군들이며 교회의 사역자(minister)들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사역은 성도의 훈련과 권징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로는 평신도 대표로서 컨시스토리를 담당하고 평신도에 대한 그에 확신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성도를 권징해야 할 최종권위로서의 "교회"를 목사들과 사람들 중에 선출된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의 연합체라고 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각양각색의 독재적 관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 구절을 뒤틀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출교의 권한은 교회에 주어졌으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합법적인 다스림은 장로들(presbyteris)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은 말씀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검열관으로 함께 연합된 평신도(ex plebe) 사역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모르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 구절에서 스스로 부과한 모든 짐을 자신들만이 져야한다고 믿는다.[18]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는 후에 대의민주제라고 불리는 칼빈식 교회 형태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매 해 2월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후 교회로 파송되는 장로들은 평신도들의 대표로 간주된다. 장로들의 임기는 1년으로 재선출될 수 있었다. 제네바 장로는 공무원이면서 교회

17) *Institutes*, 4.1.1-3.
18) *CO* 45, 516; Commentary on Mt. 18:18

의 평신도대표였는데 이러한 개념은 21세기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생경할 수밖에 없다. 컨시스토리를 통한 장로들의 사역은 칼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칼빈은 이들이 교회의 대표인 장로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믿음)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으로 오해되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오해는 현실적인 문제였기에 그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던 즈음, 1561년 법령개정을 통하여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컨시스토리의 의장이었던 시의회 최고의원(Syndic)에 대하여 그들이 컨시스토리에서 직무를 행할 때 그 자격은 장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19] 최고의원을 의장으로 한 컨시스토리는 장로들과 목사, 소환관과 서기로 구성되어 기본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오디토리움(Auditorium)에서 모여 교회 내에 생긴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필요한 경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0] 법적 권한을 가진 소환관을 통하여 문제가 된 교인들을 소환하였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였다. 1556년 이후로는 컨시스토리에 소환된 사람들의 증언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컨시스토리는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소환된 사람들이 선서(taking oath)후 증언하도록 하였다.[21] 회의의 모든 내용은 서기가 속기로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컨시스토리의 구성원 중 소환관과 서기는 고용되었고, 장로는 참석한 만큼 사례를 받았고 목사는 당연직으로 참

19) *OS* II, 362.

20) 매 주 목요일에 모이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성찬이 있기전 주일에는 출교된 사람들이 해벌신청을 많이 다루게 되면서 토요일에도 추가적으로 모였다. 예를 들어 1555년에는 컨시스토리가 55회, 1556년에는 57회 모였다.

21) 이러한 선서는 법정에는 하는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동시에 중요했다. 개신교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가톨릭교회에서 간과된 바 있는 십계명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제네바교회가 사용한 교리문답 역시 십계명은 중요한 부분인데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해 악하게 말하거나, 이웃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것을 동료인간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악한 행위라고 강조한다. 칼빈은 그의 십계명 설교에서 잘못된 증언이 가져올 수 있는 악한 결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잘못된 보고, 중상모략, 비방은 도적질보다 훨씬 더 상대를 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합시다. 주께서 어떤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 봉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웃의 명예와 유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라고 강조하였다. Sermon on the Deutoronomy 5:20:*CO* 26. 360-361.

석하기에 사례를 받지 않았다. 칼빈은 제네바교회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었던 만큼 컨시스토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회의록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특별한 이유(여행, 병환)가 없는 한 컨시스토리에 참석했기에 비교적 높은 출석을 보여준다.[22] 컨시스토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하여 일대일 권고, 일대다(증인 포함) 권고의 과정을 거쳤다.

컨시스토리에 불려온 사람들의 소환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크게 나누면 종교적인 내용과 도덕적인 내용으로 구분된다. 종교적인 내용은 가톨릭적 행위를 한 경우, 예배를 소홀히 한 것, 예배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성찬관련 문제(출교 중 성찬을 받은 경우, 성찬에 정기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도덕적인 내용은 참으로 다양했다. 부부간의 싸움, 이웃간의 갈등과 싸움, 성적인 문제, 결혼약속 파기, 불경한 언어생활, 권위에 대한 불순종, 술취함, 카드놀이, 저속한 노래와 춤, 우상숭배, 미신행위, 고리대금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 외국인혐오 관련사건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말한 대로 성도의 표지와 연결하여 분류될 수 있다. 개신교적 신앙고백에 위배되는 행동, 혹은 신앙고백에 무지한 것,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위들을 책망하고 고치는 것,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위들을 교정하는 것들이다.

컨시스토리는 문제가 있어 온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 권고도 하고 교육을 주선하기도 하고 화해를 중재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일시적 성례전 금지라는 출교를 명하였다. 여기서 출교는 굳이 비교하자면 중세교회의 소출교(minor excommunic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중 네 번 실시되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세례에 데려올 수 없었고, 결혼을 앞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

22) 필자의 연구에서는 1555년에 87%, 1556년에 74%를, 몬터의 연구에서는 1559-1560년에 53%, 1560-1561년에 83%, 1561-1562년에, 93%, 1562-1563년에 76%, 1563-1564년에 64%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어떤 경우이든 출교된 자들은 컨시스토리를 통한 해벌(restoration)을[23] 통하여 성찬에 다시 참여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몰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해벌을 시도하지도 않고 성찬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는 무관심파도 많았다. 몬터교수나 킹던교수가 출교가 제네바에서 사회통제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출교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심지어는 광적으로" 해벌을 시도하였다고 한 것[24]과는 달리, 1555년과 1556년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매우 낮은 해벌신청이 있었을 뿐이었다.[25] 이러한 현상은 1557년에 "성만찬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출교를 당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컨시스토리에 와서 해벌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의회로 보내지고 불복하는 경우 시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칼빈은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죄인에게는 회개를,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26] 마치 신경체계에 해당하는 성도의 훈련과 권징은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수시로 죄를 짓는 것을 책망하고, 무지하여 마땅히 배울 바를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훈련하고, 고집스러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수치를 경험하게 함으로 회개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훈련과 권징은 성화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사는 동안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온전히 이루게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3) 컨시스토리를 통한 해벌이 제네바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프랑스계이민자목사가 주가 된 컨시스토리를 견제한 시의회는 1553년에도 스스로 해벌을 시도하여 컨시스토리와 갈등을 일으켰다. 1555년 1월 칼빈은 시의회를 찾아가 이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컨시스토리를 통한 출교와 해벌이 확실하게 인정되었다.

24) Robert M. Kingdon,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Control in Calvin's Geneva", *Archiv für reformationsgeshichte* (special volume, 1993):521-532.

25) 1555년에서 1556년간 해벌 신청은 출교된 사람의 16.6퍼센트였고 그중 해벌된 사람은 10.7퍼센트였다.

26) *OS* 1. 372.

2. 21세기 한국장로교회와 성도의 훈련과 치리

1) 한국장로교회 권징과 치리에 관한 연구

1879년 백홍준과 이응찬이 만주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883년에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녹스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같은 해에 서상륜에 의해 황해도 장연군 송천에 최초의 신앙공동체 소래교회가 시작되었다. 1887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새문안교회와 정동감리교회가 각각 세워졌으니 19세기 말 정치경제적으로 어둡기만 했던 조선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치리가 가능한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1907년이라 하겠다. 부흥운동의 중요한 획을 긋는 1907년, 6월 20일에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첫 번째 졸업생 7명을 배출하였고, 그 해 9월 17일에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선교사 38명과 한국인 회원 40명이 참석하여 대한로회(독로회)를 조직하였다. 이 노회에서 신학교를 갓 졸업한 7명에게 목사안수를 받았고 그 중 이기풍목사는 제주도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부흥운동과 백만구령운동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 한국교회는 1911년 노회에서 7개 대리회를 7개 노회로 개편하여 1912년 9월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가 조직될 당시 7노회(경기, 충청, 전라, 함경, 평남, 평북, 황해)에 목사 96인(한국인 52명, 선교사 44명)에 장로 125명이 되었다.

치리회의 발족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권징/치리의 역사는 한국교회사가들에게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권징/치리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고 그 중 권징/치리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표된 논문으로는 권평, "初期 韓國敎會의 治理에 관한 연구"와 "初期 韓國敎會의 治理에 관한 一 硏究: 김포읍교회 당회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overnment of the Early Korean Church - a case study of

27) 두 논문은 김포읍교회의 당회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초기 치리 사례들을 분석한 거의 동일한 논문이다.

Kimpo-Op Church's minutes book"[27]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포읍교회는 언더우드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교회 중 하나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28] 이 교회의 초대 당회장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였는데 그의 주재 하에 열린 당회가 기록을 남긴 것은 1913년부터이다. 당시 김포읍교회는 경충노회 소속으로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 교회였다. 권평의 연구는 1913년부터 1929년까지의 당회록에 나타난 권징과 입교, 이명 등에 대한 사례 연구인데 이 시기 당회록의 40% 이상이 권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29] 이 논문은 초기 한국장로교회에서 치리의 전통은 엄격하게 자리잡았다고 주장한다. 새문안교회 초대장로 두 사람이 치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교직을 정지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출교를 당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본인의 결정에 의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회 간 교인의 이명(移名)을 문서로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치리를 받은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김포읍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김포읍교회에서 연구기간동안 책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유는 "음주(飮酒)와 이혼, 첩을 들이거나 아내를 버린 일, 주일을 지키지 않은 일, 천주교를 믿은 일,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결혼시킨 일, 병에 걸려 소경을 청하여 독경(讀經)한 일, 우상숭배, 제사"[30]등이다. 그런가 하면 출교 제명한 경우도 상당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24년에는 5개월 동안 31명이 출교되었다는 것이다.[31] 책벌과 함께 해벌된 경우도 기록되었는데 해벌은 "회개한 거동이 현저한고로", 또는 "회개한 표가 있음으로" 혹은 "회개하고 예배당에 잘 다니는고로", 또는 "회개한 증거가 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해벌의 근거는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사용했던 표현과 거의 동일하다. 이 연구에서 책벌/출교 대비 해벌의 비율이 연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칼빈은 권징의 목표는 해벌/회복

28) 1962년에 이 교회는 김포읍교회(통합)와 김포중앙교회(합동)로 분열되었다.
29) 권평, "初期 韓國敎會의 治理에 관한 一 硏究: 김포읍교회 당회록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43호 (2006), 589.
30) 권평, 앞의 글.
31) 권평, 595.

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2) 장로교회헌법과 권징과 치리

1907년에 조직된 대한로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형태』를 채택하여 교회의 조직과 정치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형태』는 5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 교회, 2) 예배, 3) 직원, 4) 치리회(Church Courts), 5) 수정 조항들(Amendments)이 그 내용을 이룬다.[32] 이 중에서 치리회에 대한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 교회 치리회. 제1항 치리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당회들, 노회들, 그리고 총회들을 통해 교회는 교회 치리(government)를 행사한다. 제2항 당회는 교역자 또는 교역자들과 지(역)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되며, 해당교회의 돌봄과 치리는 당회에 속한다. 당회는 사람들에게 교리문답을 실시하여 공동체에로 허락하며, 사직서를 허락하고 받으며, 치리를 시행하고, 그리고 목사가 없는 교회일 때, 노회의 권고 하에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 집례를 준비하며, 장로와 집사 선거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당회는 노회의 총대(delegates)로서 장로를 선출한다. 제3항 A. 노회는 정해진 행정구역 내에 있는 각 당회로부터 온 모든 교역자들과 한 명의 장로로 구성된다. … 제4항 총회. 총회가 조직될 때, 총회는 노회들에 의해서 선출된 총대들(representatives)로 구성된다. 각 노회는 매 다섯 교회들이나 그들의 경계선들 안으로부터 오는 한 구획을 위해 한 명의 사역자와 한 명의 장로에게 대표자 자격을 준다.[33]

위의 내용은 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총회를 포함하고 있어

32) Charles Allen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Chicago/London/Edinburgh: Fleming H. Revell Company, MCMXXX = 1930), 248-52.
33) Charles Allen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249-50. 최윤배, "직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신학적.실천적 대안모색: 한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제34권(2014), 23에서 재인용.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한국교회의 발전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예수장로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평양 여자성경학원에서 조직되었고 초대총회장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회장에는 길선주목사가 선출되었다. 이후 1915년 4차 총회부터 시작된 정치형태 개정 작업이 1921년에 결실을 맺어『조선장로회 헌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법은 1) 1907년 신경, 2)『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 정치(Government), 4) 권징(Book of Discipline), 5) 예배 (Directory of Worship)로 나눠졌다. 그 내용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치리를, 남장로교회에서 예배 지침서를 참고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34)]

이후 몇 차례 헌법의 부분적 수정이 있었고 해방이후 장로교회의 분열과 함께 각 교단별로 필요에 따라 헌법개정이 각각 진행되었다. 여기서 세 교단의 예를 살펴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정치의 일부와 권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헌법개정위원회가 선임되었고 3년간의 연구 이후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2006년에 열린 제91회 총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이후로 시행되었다. 한편 합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1960년 12월 13일에 승동교회에서 모인 제45회 총회에서 헌법과 총회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고 1962년에 수정안을 통과하였다. 이후 1968년에 일부수정을 거쳐 1990년에 재수정하기 시작하여 1992년 9월 22일에 회집된 제77회 총회에서 가결하고 공포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은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분립하고 1954년 이후 대한기독교장로회로, 1961년 이후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개칭하여 신앙고백서와 헌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현재 사용하는 헌법은 2014년 개정판으로 확인된다.[35)]

각 교단의 헌법과 규칙서에서 권징은 통합에서는 "권징편"에, 합동은 "권징조례", 기장 역시 "권징조례"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단의 권징에 관한

34) Charles Allen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252.
35) "총회연혁" http://www.prok.org/ 2014년 10월 15일 접속.

조례는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세 교단의 권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며 칼빈의 신학과 목회실천에 나타난 권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세 교단의 권징의 의의를 보면 세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합동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치리회를 통하여 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권징의 목적에서는 통합의 경우가 칼빈이 제시한 목적과 일치하였다. 칼빈이 말한 것과 가장 유사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와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36]이라고 명시했다. 합동의 경우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37]이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으로, 범죄자의 회개의 경우 "신령적 유익"이라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기장의 경우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범죄가 권징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세 교단의 헌법에서 합동과 기장은 크게 세 가지, 즉 성경에 위반되는 신앙과 행위, 교회가 정한 규칙이나 관례를 위반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38] 반면 통합은 11가지로 비교적 상세하게 범죄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36) http://www.pck.or.kr/PckInfo/law01.asp?Depth=4&volume=제3편 (2014년 10월 20일 접속). Cf. *Institutes*, 4.12,
37) http://www.gapck.org/sub_06/sub07_01.asp 2014년 10월 20일 접속..
38) 기장의 경우 제3조 "범죄"에서 세 가지 경우를 함께 다루는 반면, 합동헌법에서는 '제3조 범죄'와 '제4조 재판안건'을 함께 읽을 때 세 가지 경우를 찾아낼 수 있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39]

이상의 죄목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죄목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컨시스토리에서 다뤄진 죄들이 크고 작은 범죄나 수치스러운 행위들, 그리고 고집스러움이라면 그것들은 공적이고 공동체에게 거침돌이 되는 경우여야 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에 대해 다룰 때 죄가 공적으로 드러나고 교회에 끼친 혹은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파한 것[40]과 연결되어 있다. 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공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15-17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되, 교회의 절차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경우는 죄의 경중에 따라 구두권면하거나 출교를 적용시켰다.

39) http://www.pck.or.kr/PckInfo/law01.asp?Depth=4&volume=제3편 2014년 10월 20일 접속.
40) *Institutes*, 4.12.6.

권징의 종류에 대해서는 합동측의 조례가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의 제 35조에서 제목 없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의 종류로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기장이나 통합은 조례 전반부에서 권징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장은 신도와 직원을 구분하여 정하고 책벌의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41] 한편 통합은 책벌의 여러 종류를 정의하고 기간을 제시한다. 이어서 각 대상(교인, 직원, 치리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책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어[42] 상대적으로 더 명확해 보인다.

세 교단의 권징조례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치리회에 관해서는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으로 나뉘어져 각각 독립적으로 그러나 단계적으로 치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43] 노회나 총회재판국의 구성원이 홀수이고 과반수는 목사로 구성된다는 점, 권징조례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구성되며 진행되고 결과가 실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 중 재판국의 구성원을 정함에

41) 권징조례 제8조 2항의 책벌의 종류에서 "1) 직원에 대하여 (1) 시무 정지 (2) 시무 해임 (3) 정직 (4) 면직 2) 신도에 대하여(1) 권계 (2) 견책 (3) 수찬 정지 (4) 출교"를 명시하였다. http://www.prok.org/config/download.php?DIR=board_upload&FILE=2014_rule.pdf(2014년 10월 20일 접속)

42)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http://www.pck.or.kr/PckInfo/law01.asp?Depth=4&volume=제3편 (2014년 10월 20일 접속)

43) 합동의 경우 유일하게 대회재판국이 있는데 실제로 교단 구성에서 대회가 드러나지 않고 권징조례에서도 그 구성이 설명되지 않아 이 대회가 미국장로교에서 말하는 노회와 총회 사이는 대회(Synod)를 가르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있어 목사의 권한을 장로보다 조금 높게 정한 것은 인상적이다.[44] 제네바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목회와 연관되고 시의회의원 중 장로가 되었던 제네바교회의 상황과는 달리, 설교와 다른 종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정과 목회 전체의 기능이 통합된 전문직 목사의 개념이 팽배한 대부분의 현대교회에서 당연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목사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평신도 장로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사들의 세력규합으로 보인다면, 노회나 총회를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목사들의 조합(union)'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마치는 말: 제네바교회는 한국장로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가?

16세기 제네바교회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는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양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개신교 신뢰도의 하염없는 추락을 송구함과 애탄으로 직시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할 장로교회가 존 녹스가 칭송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학교" 제네바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칼빈식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프로젝트"는 과연 오늘 한국장로교회에서 가능할까? 필자는 불행히도 이 점에 대해 솔직히 사뭇 부정적이었다고 인정한다. Church Discipline을 권징만으로 해석한다면 더 더욱 그렇다. 이명장부를 정리할 수 없는 오늘 개신교회, 경쟁적으로 교인모시기에 급급한 한국교회에서 권징의 효과를 어떻게 보겠는가? 일부에 그치겠지만 목회자들의 비리가 필요 이상으로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권징할 수 있겠는가?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진정한 동역, 협력 사역을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장로교

44) 총회재판국의 경우 세 교단이 일제히 15인으로 구성원을 정하고 목사8명 장로 7인이라 하였다. 노회재판국의 경우 합동은 7인 이상으로 하고 목사가 과반수, 즉 4인 이상이라 정한다. 통합은 9인으로 이중 5명이 목사이다. 기장은 7인에서 15인까지 둘 수 있는데 과반수가 목사일 것을 주문한다. 합동의 경우는 유일하게 회의 성수까지 명시하여 총회재판국의 경우 성수는 11인이고 그 중 6명이 목사가 된다.

회, 혹은 장로교정치형태를 택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있는가?

답하기 어려운 무거운 질문들로 이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초반부에서 church discipline의 용어를 다시 쓴 것은 church discipline이 갖고 있는 '훈련'의 개념에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함에서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훈련과 삶의 훈련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 권징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훈련이 그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 다양한 죄에 대한 경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사회가 얼마나 죄를 부추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설교와 실제적인 목회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드러내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칼빈이 말한 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외적 수단(external means)이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